

### 大田直轄市教育公務員任用候補者選定競爭試驗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議案 番號	32
----------	----

提出年月日 : 1991. 10 .

提出者 : 대전직할시교육감

#### 1. 提案理由

大田直轄市教育公務員任用候補者選定競爭試驗手數料 徵收額이 實所要經費에 未達되어 手數料를 引上하고자 함.

#### 2. 主要骨子

大田直轄市教育公務員任用候補者選定競爭試驗 手數料를 2,000원에서 18,000원으로 引上하고자 함.

#### 3. 參考事項

가. 1991년도 大田直轄市教育公務員選定競爭試驗 施行 經費 및 手數料 徵收現況

(단위 : 1,000원)

구분	시행 횟수	응시 인원	경비 집행액 (A)	수수료 수입액 (B)	차액 (A-B)	총당률 (%) (B/A)	1인당 소요액	비고
중등	1회	509명	16,014	1,018	14,996	6.4	31,460원	
초등	1회	174명	10,179	348	9,831	3.1	58,500원	
계		683명	26,193	1,366	24,827	5.2	35,350원	

\*1991年度·시행 각시·도 公開銓衡 所要經費내역 : 別添

나. 教育公務員任用候補者選定競爭試驗規則 (教育部令)에 同試驗 應試手數料를 2,000원으로 定하였으나 이를 現實化 하기 위하여 각 시·道條例로 定하여 시행 할 수 있도록 1991. 10. 8자로 改正 公布됨.

대전직할시조례 제 호

**대전직할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대전직할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2,000원”을 “18,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구 조문 대비표

구	신
<p>제2조(징수금액) 대전직할교육감이 실시하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는 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응시 수수료로서 <u>2,000</u> 원을 납입하여야 한다.</p>	<p>제2조(징수금액) ..... ..... ..... <u>18,000</u> ..... 원을 납입하여야 한다.</p>

## 대전직할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대전직할시교육감이 실시하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금액)대전직할시교육감이 실시하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는 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응시수수료로서 18,000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납부방법등)①제2조의 응시 수수료는 대전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한다.

②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조례 제 1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關係法令 拔萃

###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응시수수료)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교육부령 제 604호 1991년 10월 8일 개정)